



의안번호

제31호

**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 
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17. 5. 23.

#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 23.  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 내용을 보완·개정하여 사이버 논산 시민에게도 혜택을 주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경감 중 사이버 논산시민에게 100분의 80 범위에서 관람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19조제6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감사담당관)
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(사회복지과)
- (3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  - 예고기간 : 2017. 2. 24. ~ 2017. 3. 16.
  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문화정책과(041-635-2413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 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6호 중 “사람”을 “사람 및 사이버 논산시민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문 화 예 술 과 장	송 순 이
	문 화 예 술 팀 장	박 기 연
	담 당 자	한 만 옥 (041-746-5950)

□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관람료의 경감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관람료를 경감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사 랫</u></p>	<p>제19조(관람료의 경감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사 랫</u> <u>및 사이버 논산시민</u></p>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- 해당 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결과

**3. 작성자**

문화예술과장 송 순 이

**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**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**

제15조의3(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**□ 「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**

제6조(혜택) 시장은 사이버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.

1. 사이버시민증 수여
2. 사이버시민 가맹점에서 발행하는 할인 쿠폰 및 마일리지 제공
3.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·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
4. ~ 13.(생략)